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와 국책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대학평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2.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정원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대학 평가
3.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③ “국책사업”이란 정부부처 및 지자체(이하 ‘정부부처 등’)에서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대학 설립정신의 구현과 발전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학술연구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유치에 따른 업적 인정은 교원업적 평가규정 시행세칙의 외부연구비수주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간사업비 5억 미만의 국책사업은 본 규정 제3장에 명시된 ‘업무분장 및 추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유치를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본 규정에 따른 업적인정, 수당 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④ “국책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란 국책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TF조직으로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구성한다.

⑤ “국책사업 추진부서(이하 ‘추진부서’)”란 추진단이 국책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대내외 협조, 추진단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 사업단 작업공간 구축 및 지원과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단, 위원회는 추진단에 추진부서의 기능을 부여 할 수 있다.

⑥ “참여인력”은 대학평가 보고서 또는 국책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여하는 추진단장, 실무총괄, 분과장, 위원을 말한다.

제 2 장 국책사업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존 사업의 재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국책사업 추진부서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
6. 참여인력에 대한 업적 인정,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7. 대응자금을 포함한 국책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8. 국책사업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9. 국책사업(기타국책사업 포함) 사업단별 정기적 성과 점검 및 평가
10. 국책사업 운영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처장의 요구와 위원장과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공고에 의해 기획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지원 및 간사)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기획처 평가전략팀에서 담당하며, 간사는 평가전략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의록은 생략한다.

제 3 장 업무분장 및 추진절차

제9조(업무분장)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획처 평가전략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리 규정 관련 업무
2. 국책사업관리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3.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학평가 관련 업무
4. 국책사업 사업공고 모니터링, 사업 공고문 대학 게시판 게시,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업무
5.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국책사업의 참여인력 구성, 업적 인정, 수당 지급,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업무

④ 재무처 예산팀은 국책사업의 사업예산 및 대응자금 투자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

- ⑤ 교무처 교무팀, 사무처 총무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득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별 업적 인정과 인센티브 반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⑥ 대학 각 부서는 부서업무와 관련성 높은 사업에 대한 사업공고 모니터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참여인력) ① 참여인력은 추진단장, 실무총괄, 분과장, 위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 ② 대학평가의 추진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③ 국책사업의 추진단장은 국책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부총장, 해당사업의 관련부서 처·실장 또는 역량이 있는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 ④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대학평가 또는 국책사업의 추진 총괄
 - 2. 실무총괄, 분과장, 위원 추천
 - 3. 참여인력별 참여등급(안) 작성
- ⑤ 실무총괄, 분과장은 해당사업 관련 부서의 처·실장, 부처장, 팀장 또는 사업 선정 시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직원으로 정한다.
- ⑥ 위원은 해당사업 관련 부서의 처·실장, 부처장, 팀장, 직원 또는 사업 선정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 직원으로 정한다.
- ⑦ 참여인력은 기획처 평가전략팀 내부결재에 의해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촉된 이후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절차)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대학 각 부서와 기획처는 국책사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② 국책사업의 사업공고 공문을 접수하거나 사업 공고게시물을 확인한 부서는 즉시 기획처 평가전략팀에 통보한다.
- ③ 기획처장은 해당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별도양식)을 작성할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 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국책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기대효과가 높을 경우 국책사업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추진단 구성안, 추진부서 및 사업추진 예산안을 보고한다. 단, 기획처장은 기대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국책사업 추진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책사업위원회는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제 4 장 업적 인정 및 인센티브

제12조(참여등급) ① 추진단의 참여등급은 사업추진단장, 실무총괄위원 및 위원 S, A, B, C로 총 6등급으로 분류하며, 업적 인정, 수당 지급,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 사업추진단장 : 기준값의 120%

나. 실무총괄위원 : 기준값의 110%

다. 위원 : S등급(기준값, 100%), A등급(기준값의 80%), B등급(기준값의 50%), C등급(기준값의 20%)

- ② 사업추진단장은 실무총괄과 협의하여 참여인력별 역할의 중요도 및 난이도, 참여기간을 고려하여

참여인력별 참여등급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추진단장은 개별위원 등급을 3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참여등급을 확정한다. 단, 위원회에서는 참여인력별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사업의 대학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등급안을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업적 인정) ① 참여인력의 업적 인정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표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업적인정 기준표>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를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직원 참여인력의 참여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④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인사평가시 코어를 포함한 모든 기준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해당 교원의 의사에 따라 연구 또는 산학분야 점수로 부여한다.

⑥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국책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의 업적 인정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표 <국책사업 참여교원 업적인정 기준표>에 따른다.

제14조(수당 지급) ① 해당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추진을 통한 대학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참여인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인력의 수당 지급 기준은 재무처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참여도가 낮은 경우(C등급)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3조에 따라 업적점수가 부여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인센티브) ① 대학평가 결과 목표성과를 달성한 경우 또는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에 미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 및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② 인센티브는 업적 인정 또는 수당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제14조 ②항에 따른다.

제16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한다.

② 본 규정은 2019학년도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학평가와 국책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국책사업관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